

의안번호	제 9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7월 7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9 호
----------	-------

제출연월일 : 2014. 7.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및 변경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 업 명	수 량	금 액
과학직업교육과	건물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4,630.0	4,043,588
	토지	창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 변경(취소)	△39,259.0	△1,000,000
체육보건급식과	건물	충북체육고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5,100.0	10,806,750
시 설 과	건물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개축	2,803.0	6,548,00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분평초 다목적교실 증축	1,127.0	2,190,468
	건물	남이초 다목적교실 증축	880.0	2,435,617
	토지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토지 매입	643.0	280,000
	건물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338.0	1,601,877
	건물	오창중 교실 증축	5,115.0	8,932,629
충주교육지원청	건물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6,165.0	12,750,000
합 계		(10건)	△12,458.0	48,588,929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분			당초계획			제1차 수시분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취득합계		14	205,949.50	133,943,003	10	△12,458.00	48,588,929	24	193,491.50	182,531,932
	계	토지	5	168,583.00	11,871,973	2	△38,616.00	△720,000	7	129,967.00	11,151,973
		건물	9	37,366.50	122,071,030	8	26,158.00	49,308,929	17	63,524.50	171,379,959
		기타									
	1. 매입	토지	5	168,583.00	11,871,973	2	△38,616.00	△720,000	7	129,967.00	11,151,973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9	37,366.50	122,071,030	8	26,158.00	49,308,929	17	63,524.50	171,379,959
		기타									
처분	처분합계		4	23,576.63	1,021,800				4	23,576.63	1,021,800
	계	토지	2	21,824.00	845,150				2	21,824.00	845,150
		건물	2	1,752.63	176,650				2	1,752.63	176,650
		기타									
	4. 매각	토지	2	21,824.00	845,150				2	21,824.00	845,150
		건물	2	1,752.63	176,650				2	1,752.63	176,650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과학직업 교육과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산145-21	4,630	4,043,588	하반기	현 청주농고 통합목장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미 편입지역에 농업계 공동실습소 축사, 현장교실 등 이전 신축	교육감	도면1
과학직업 교육과	토지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외	△39,259	△1,000,000	하반기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 목장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 취소 (2013.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분)	교육감	도면2
충북체육 고등학교	건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44	5,100	10,806,750	하반기	충북체육고 이전에 따른 종합훈련장(체조외3종목) 신축	교육감	도면3
보은자영 고등학교	건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2,803	6,548,000	하반기	재난위험시설인 본관 교사를 시설노후 및 안전상 문제로 철거 후 개축	교육감	도면4
분평초등 학교	건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198	1,127	2,190,468	하반기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5
남이초등 학교	건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255	880	2,435,617	하반기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6
울량 중학교	토지	청주시 청원구	643	280,000	하반기	다목적교실 증축에 따른 가감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부대공사비 증액 (2013. 재차 변경계획 반영분)	교육감	도면7
	건물	울량동 581-6외	338 (기정 1,457)	1,601,877 (기정 2,773,146)				
오창 중학교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 리 151-4	5,115	8,932,629	하반기	오창 제2산업단지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증축	교육감	도면8
충주교육 지원청	건물	충주시 교현동 681-2외	6,165	12,750,000	하반기	노후된 현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 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교육감	도면9
합 계 (9 건)			△12,458	48,588,929				

①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신축

- 재산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산145-21번지 외 10필지
- 신축면적 : 건물 4,630m²
- 취득금액 : 4,043,588천원
- 사유 : 당초 보은 산외면 보은자영고 목장 부지에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를 이전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현재 청주농고 통합목장 중 미편입 부지에 축사, 현장 교실 등을 이전 신축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 제고

②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 재산위치 :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
- 변경면적 : 토지 △39,259m²
- 변경금액 : △1,000,000천원
- 사유 :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의 초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산외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토지 매입 계획 변경(취소)

※ 2012.11.30.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의결(2013. 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신축

- 재산위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44번지
- 신축면적 : 5,100m²
- 취득금액 : 10,806,750천원
- 사유 : 충북체육고 이전에 따른 체조, 태권도, 우슈, 양궁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인 종합훈련장 신축

④ 보은자영고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 재산위치 :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번지
- 개축면적 : 건물 2,803m²
- 취득금액 : 6,458,000천원
- 사유 : 2003년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본관 교사를 시설노후 및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 후 개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⑤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증축위치 :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 1198번지
- 증축면적 : 1,127m²
- 취득금액 : 2,190,468천원
- 사유 :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⑥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증축위치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 증축면적 : 880m²
- 취득금액 : 2,435,617천원
- 사유 : 체육교과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⑦ 율량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추가)

- 증축위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81-6번지
- 매입부지 : 토지 643m²(증 643m²)
- 증축면적 : 건물 1,795m²(기정 1,457m², **증338m²**)
- 취득금액 : 4,655,023천원(부지 280,000천원, 건물 4,375,023천원)
 - 기정 2,773,146천원(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 **금회 1,881,877천원(부지 280,000천원, 건물 1,601,877천원)**
- 사유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에 의한 가감속차로 설치 부지 매입과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부대공사 증가에 따른 증축 변경
※ 2013.12.1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의결(2013. 제4차 변경계획)

⑧ 오창중학교 교실 증축

- 설립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4번지
- 신축면적 : 5,115m²
- 취득금액 : 8,932,629천원
- 사유 : 오창제2산업단지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일반교실 24실 및 다목적실 등) 증축

⑨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

- 신축위치 : 충주시 교현동 681-2번지 외 2필지
- 신축면적 : 건물 6,165m²(지하주차장 1,020m² 포함)
- 취득금액 : 12,750,000천원
- 사유 : 노후된 현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도면 1 :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 원)	사 유
충청북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 목장 이전 신축	건물	청원군 오창읍	산145-21 외10필지	철콘조 시벽조	4,630	4,043,588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축사 11동, 현장교실 4실 등 이전 신축
계					4,630	4,043,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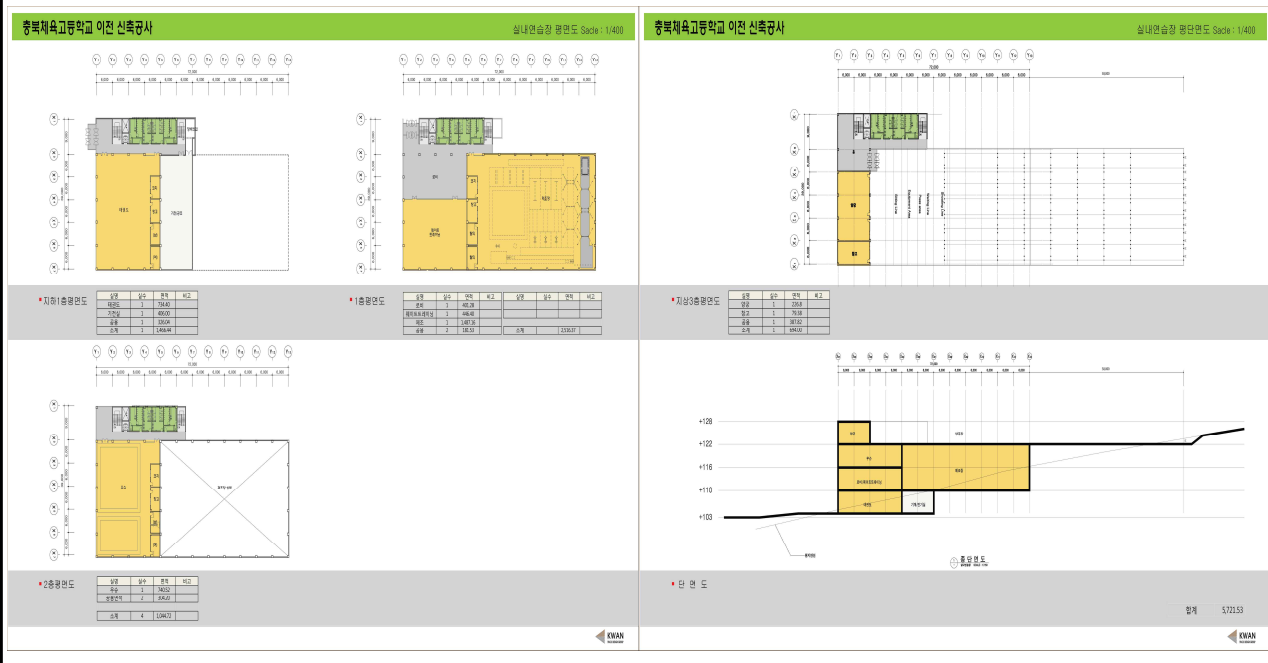
도면 2 :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위치도

건 명	소재지	지 번	구조	수량 (㎡)	취득금액 (천 원)	사 유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 부지 취득 계획변경(취소)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외 19필지	전 외	△39,259	△1,000,000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 목장 이전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부지 매입 계획 취소 (기 2013.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계				△39,259	△1,000,000	



도면 3 : 충북체육고 체육선수 합동훈련장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충북체육고 합동훈련장 신축	건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44	철콘조	5,100	10,806,750	충북체육고 이전에 따른 체육선수 종합훈련장 신축
계					5,100	10,806,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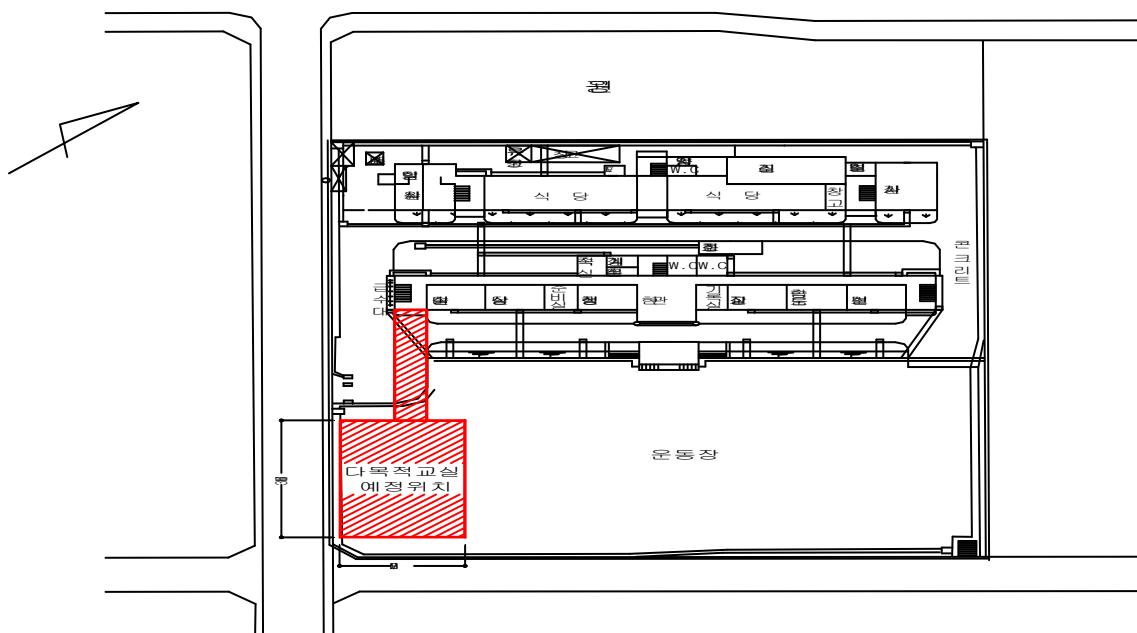
도면 4 :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보은자영고 본관교사	건물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철콘조	2,803	6,548,000	시설노후 및 안전상문제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본관교사(1810㎡)를 철거 하고 현 위치에 개축
계					2,803	6,548,000	



도면 5 : 분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분평초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198	철근콘 크리트	1,127	2,190,468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					1,127	2,190,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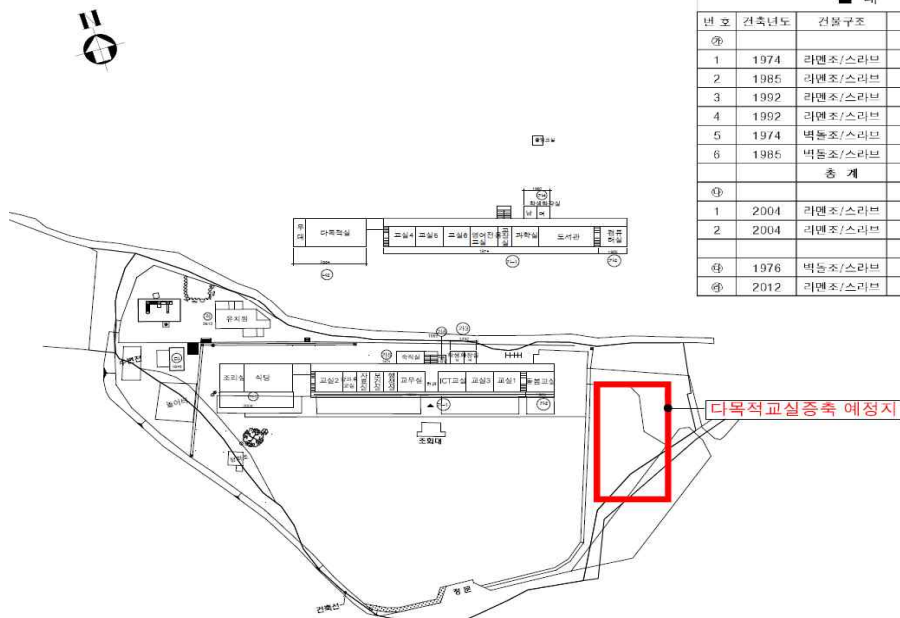


도면 6 : 남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남이초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청주시구 서원남이 면대련리	255	철근콘 크리트	880	2,435,617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계					880	2,435,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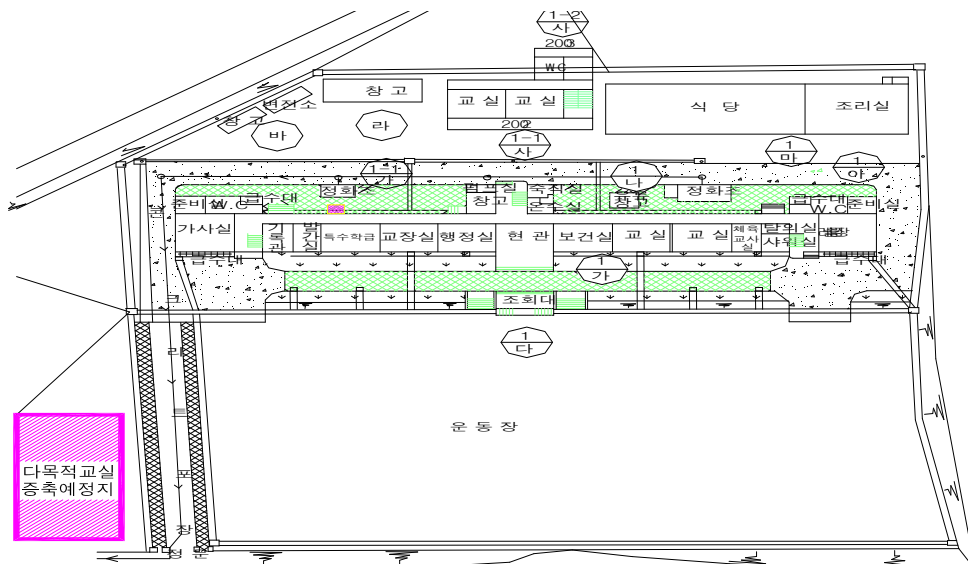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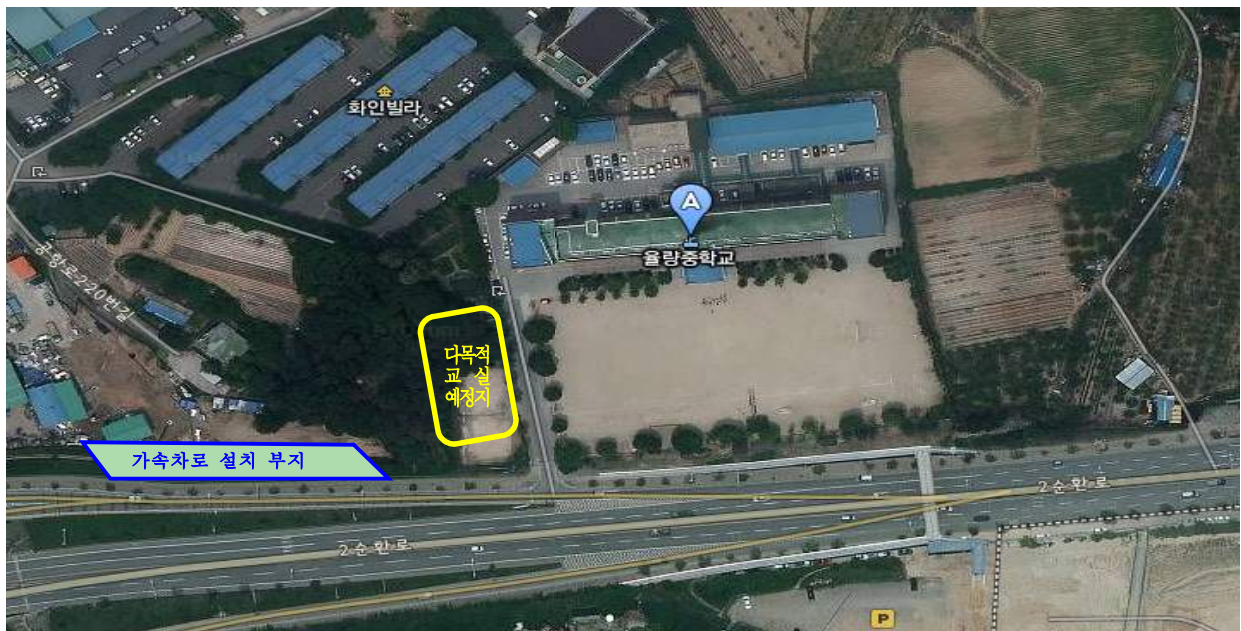
■ 남이초등학교



■ 대 조 표 ■					
번 호	건축년도	건물구조	주 용 도	실수(실)	면적(㎡)
①					
1	1974	라멘조/스라브	교실	14.5	1,445.00
2	1985	라멘조/스라브	교실	2.0	180.00
3	1992	라멘조/스라브	화장실	대9소8	58.24
4	1992	라멘조/스라브	화장실	대9소6	58.24
5	1974	벽돌조/스라브	숙직실		42.77
6	1985	벽돌조/스라브	직원화장실	대2소2	9.50
		총 계		16.5	1,793.75
②					
1	2004	라멘조/스라브	급식소	2.5	207.00
2	2004	라멘조/스라브	다목적실	2.5	273.31
				5.0	480.31
③	1976	벽돌조/스라브	황고		36.00
④	2012	라멘조/스라브	유치원	1.5	1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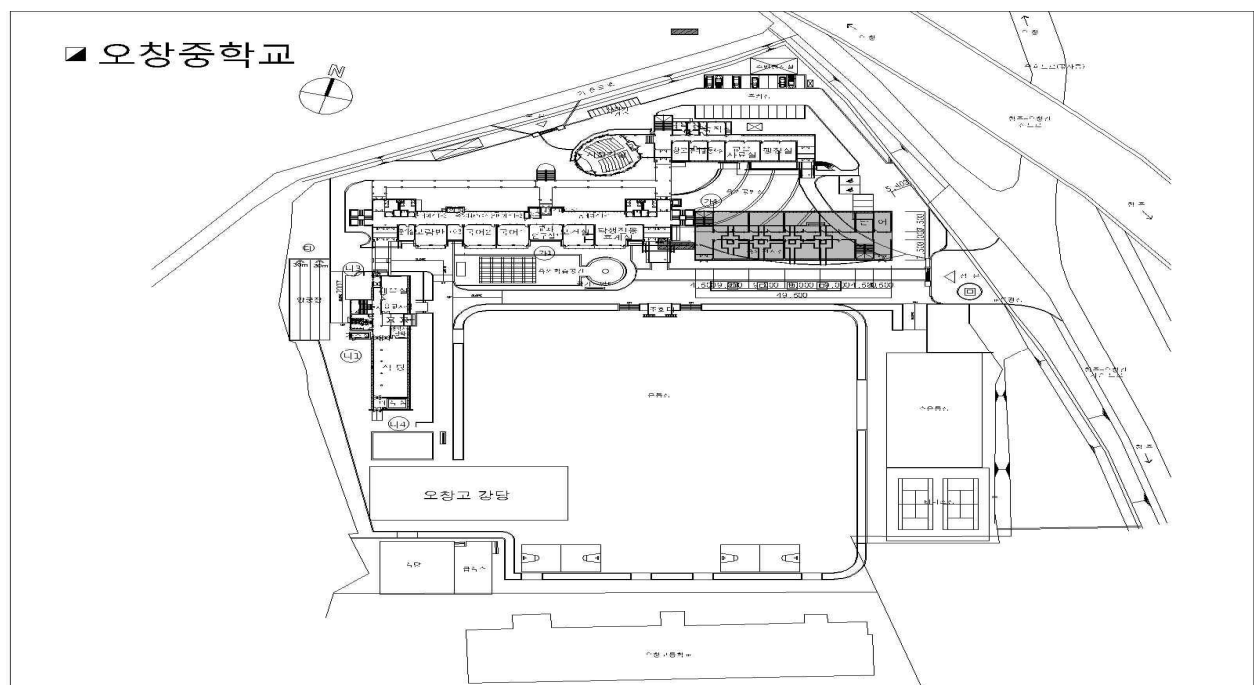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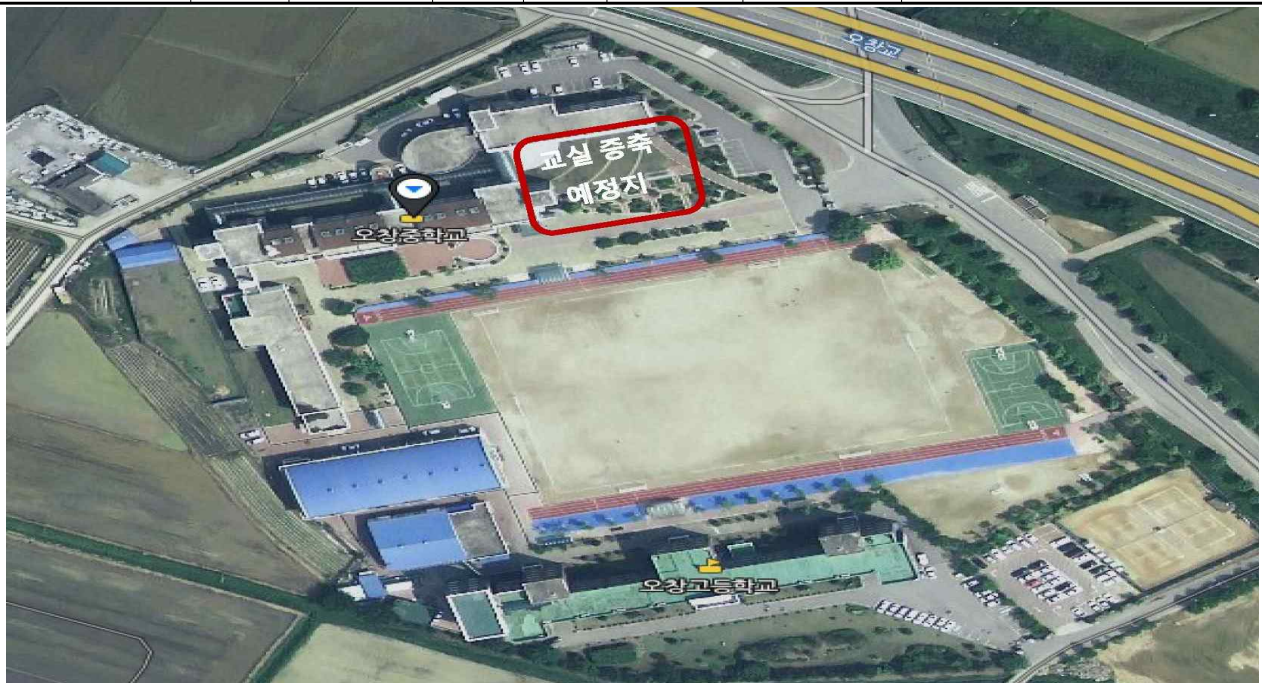
도면 7 :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율량중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토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87-11 외 4필지	답외	643	280,000	가감속차로 설치 부지 매입과 다목적교실 물량 증가에 따른 부대공사비 증가 - 2013. 공유재산4차변경계획(기정) · 건물 1457㎡/ 2,773,146천원 - 2014. 1차 수시분 관리계획(금회) · 토지 643㎡/ 280,000천원 · 건물 338㎡/ 1,601,877천원 총계 토지 643㎡/ 280,000천원 건물 1,813㎡/ 4,375,023천원
	건물		288-9	철근콘크리트	338 (기정 1457)	1,601,877 (기정 2,773,146)	
계					981	1,881,877	



도면 8 : 오창중학교 교사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오창중학교 교사증축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4	철근 콘크 리트	5,115	8,932,629	오창제2산업단지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일반교실 24실 및 다목적실 등) 증축
계					5,115	8,932,629	



도면 9 :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취득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 금액 (천 원)	사 유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물	충주시 교현동	681-2 번지외 2필지	철근 콘크 리트	6,165	12,750,000	노후된 현 충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 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계					6,165	12,750,000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